

개정 전	개정 후
제출할 수 있다. ③ · ④ (생 략) <u><신 설></u>	-----. 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	<u>⑤ 법 제103조의19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(이하 “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”이라 한다)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103조의23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등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</u>
<u>⑤ 법 제103조의19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경우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차감한다.</u>	<u>⑥ 법 제103조의19제4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또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-----</u> ----- ----- -----.
<u>⑥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19제2항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, 납세지 관할 세무서</u>	<u>⑦ ----- ----- ----- 외국법인세액 또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공제금액을 ----- ----- -----</u>